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 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 및 일청관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 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기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 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출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 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 ①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제18조(학교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감, 안전생활부장, 교육과정기획부장, 교육과정연구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안

전생활부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안전생활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모범학생 표창에 대해 협의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주의'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제30조 ⑤항에 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3.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6. 기타 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의 경우와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2. 학교내 봉사 : 10일(1일 1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사회봉사 : 1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기한은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4.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 해당 학생은 담당 교사의 지도에 따라 훈계·훈육, 상담, 특별과제 이수 등을 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이외의 훈계·훈육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생활교육 담당 교사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5.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6.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

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라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기준)

징계 기준은 학생 징계 기준표에 준한다.

제5장 모범학생 표창

제35조(내용)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표창을 심의·의결한다.

제36조(시상)

- ① 표창은 정기시상과 임시시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정기시상은 5월(청소년의 달)과 11월(학생의 달)에 실시한다.
- ③ 임시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7조(표창 대상)

담임교사와 지도교사는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 하여 시상한다.

제38조(자격)

표창 대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모범이 되는 학생
- ② 불우한 학우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 ③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공로가 있는 학생
- ④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 ⑤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 ⑥ 선행을 실천하거나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⑦ 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9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이하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개정심의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 모 대표, 학생 대표 및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42조(심의 및 결정)

- ① 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 3. 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7. 9. 28.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마. 학생 징계 기준표

| 구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 계 | | | | |
|----|----|---|-----|------|------|------|------|
| | | | 주 의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함 | | | | | |
| | 2 | 용의가 단정치 못함 | | | | | |
| | 3 | 언행이 불손함 | | | | | |
| | 4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음 | | | | | |
| | 5 | 성행이 불량하여 주변으로부터 학교에 통보됨 | | | | | |
| 준법 | 6 | 학교의 지정된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음 | | | | | |
| | 7 | 공중도덕을 위반함 | | | | | |
| | 8 | 학교 단체 행사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 | | | | | |
| | 9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됨 | | | | | |
| | 10 | 오토바이, 승용차를 유희적으로 타거나 폭주 및 무면허임 | | | | | |
| | 11 |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행위를 함 | | | | | |
| | 12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 | | | | |
| | 13 | 징계지도에 불응함 | | | | | |
| | 14 | 유언비어 유포에 적극 가담하거나 예비음모를 함 | | | | | |
| | 15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됨 | | | | | |
| | 16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 | | | | | |
| | 17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함 | | | | | |
| | 18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19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고의로 방화 행위를 함 | | | | | |
| | 20 |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를 함 | | | | | |
| | 21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욕설,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보이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22 | 환경오염을 일으켜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함 | | | | | |
| | 23 | 학생간 무고행위로 피해를 입힘 | | | | | |
| | 24 | 공공시설물, 게시물, 집기류 등을 파손함 | | | | | |
| 수업 | 25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26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함 | | | | | |
| | 27 | 수업을 거부함 | | | | | |
| | 28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함 | | | | | |
| | 29 | 시험을 거부함 | | | | | |
| | 30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함 | | | | | |
| | 31 |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함 | | | | | |

| 구 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 계 | | | | |
|---------|----|--|-----|---------|---------|---------|---------|
| | | | 주 의 | 교 내 봉 사 | 사 회 봉 사 | 특 별 교 육 | 출 선 정 지 |
| 근 태 | 32 |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함 | | | | | |
| | 33 |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함 | | | | | |
| | 34 | 무단가출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함 | | | | | |
| | 35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임 | | | | | |
| | 36 |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임 | | | | | |
| | 37 |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임 | | | | | |
| 약 물 | 38 | 흡연 또는 음주를 함 | | | | | |
| | 39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임 | | | | | |
| | 40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을 사용함 | | | | | |
| | 41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함 | | | | | |
| 퇴 폐 행 위 | 42 | 도박을 함 | | | | | |
| | 43 |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함 | | | | | |
| | 44 | 음란물을 시청함 | | | | | |
| | 45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함 | | | | | |
| | 46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 | | | | |
| | 47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함 | | | | | |
| 금 품 | 48 | 공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49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하거나 절취, 사취, 강탈함 | | | | | |
| 집 단 | 50 | 학생을 선동하거나 가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함 | | | | | |
| | 51 | 불법집회에 참여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함 | | | | | |
| | 52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 | | | | |
| | 53 | 수업, 학교행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동함 | | | | | |
| | 54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함 | | | | | |
| 기 타 | 55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함 | | | | | |
| | 56 | 징계기준이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함 | | | | | |

바. 학생자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교내봉사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
 7.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학교](#)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 각 1인

제8조 (부서)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단, 필요시 부서의 명칭이나 설립은 조정할 수 있다.

- ① 문예부 : 이 회의 사업계획, 예산계획 및 필요한 사무, 학예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②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③ 학습부 :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업 향상을 위한 사항
- ④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학생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환경과 자연보호 및 학교 주변 정화에 관한 사항
- ⑤ 홍보부 : 교내 행사 정보제공과 기록 및 학교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⑥ 독서부 : 독서활동을 위한 학급도서 및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사항
- ⑦ 생활부 : 교내질서, 교풍확립과 학생자율 생활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원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학교장의 임명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한다.
- ② 부장, 차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회장, 부회장은 학생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지 아니한 자
 3. 부장 및 차장은 학생징계(사회봉사 이상)를 받지 아니한 자
- ④ 회장, 부회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⑤ 회장 단독출마의 경우는 회장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2학기부터 차기년도 1학기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생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12조 (구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정·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학급의 의견 발표·수렴 및 각종 행사시 활동추진
- ②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③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개최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경비)

- ① 예산 집행에 관한 사무처리는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6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대의원의 기명투표에 의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의원은 학급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 결정에 따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제1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품행이 단정하고 지도력이 우수한 2학년 재학생
- ② 유급 및 유예한 사실이 없고 재·전·편입학하여 6개월이 경과된 학생
- ③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제3조(선거일)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매년 7월 중에 실시한다.

제4조(비용) 비용은 학생자치 활동비에서 지출한다.

제5조(선거관리) 선거관리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7일전까지 대의원회에서 10명内外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당해 학생자치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②(업무 및 권한)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 ③(개최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선거관리 업무 시행 규칙

제6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5일전까지 선거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조(선거인 명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② 투표 당일 결석자를 파악,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한다.

제8조(후보자)

-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서류 : 등록 신청서 1통, 후보주천서(학년별 5명 이상, 총 15인 이상) 1통, 선거운동원 명단(5명 이내) 1통, 공명선거 서약서 1통
- ③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요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시간 후 자격을 심사하여 1시간 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⑤ 다음의 경우 후보자격 박탈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등록 서류의 하자
 2. 폭행, 협박 유언비어의 유포
 3. 물품 및 금품 배포
 4. 선거방해 및 부정선거 행위

제9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심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④ 연설회는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연설회를 실시하되 선거일 하루 전에 실시한다.
- ⑤ 선거운동원은 9명으로 제한한다.

제10조(투표)

- ① (투표방법)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 ② (투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한 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 인명부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 참관인 좌석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투표에 관한 공고는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⑤ 투표소에는 각 후보 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⑥ 투표용지는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한다.
- ⑦ 투표 시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한다.

제11조(개표)

- ① 개표 장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다.
- ② 투표 시의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 ③ 개표 완료 후 당선자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수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다.

제12조(무효투표)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③ 2인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④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⑤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13조(당선인의 공고)

- ① 개표종합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 결선투표를 한다.
- ② 후보자가 단일인 경우에는 총투표권수 2/3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1/2 이상 득표를 당선으로 한다.
- ③ 당선인 결정될 때에는 당해년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부칙)

- ① 본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관례에 준하되 그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며, 위의 모든 조항은 교육적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회칙 효력발생 이전에 선임된 본 회칙에 준해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 회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회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사. 학교 용의복장 규정

제1조(목적)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학생으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시키며, 면학기풍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복장)

- ① 반드시 규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체육시간에는 정해진 체육복을 착용한다.
- ② 교복을 임의적으로 변형하여 입지 않는다.

제3조(두발)

- ① 머리는 학생다움을 잃지 않도록 한다.
- ② **가급적** 무스, 스프레이, 염색, 스크레치, 파마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신발)

- ① 단정한 형태의 운동화 및 학생용 구두를 착용하고 등교하며, 교내에서는 실내화, 교외에서는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한다.
- ② 뒷굽을 구부려 신지 않는다.

제5조(모자)

- ① 교복을 입을 때에는 **가급적** 모자를 쓰지 않는다.
- ② 다만, 부득이 모자를 써야 할 경우 사전에 교사의 승인을 얻어 쓰도록 한다.

제6조(체육복규정)

| 구분 | 디자인 및 재질 | 규정 |
|----|----------|--|
| 상의 | 동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청색 긴팔 카라• 어깨-손목, 옆구리 부분에 하늘색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복착용 시 지퍼를 잠갔을 때 목 커버가능• 타이트 하지 않고 여유로워야 한다. |
| | 하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색 반팔 카라 티• 카라, 어깨-팔 부분 검정색 |
| 바지 | 동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청색 긴 바지• 골반-발목까지 바깥쪽 부분에 하늘색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무 짹 끼이거나, 골반바지는 불허한다.• 원칙적으로 원형 변형을 금지한다. |
| | 하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색 반바지• 골반-무릎까지 바깥쪽 부분에 하늘색 라인 <p>다만, 크기가 맞지 않아 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제7조(교복규정)

① 남학생

| 구분 | | 디자인 및 재질 | 규정 |
|-----------------|----|--------------------------------------|--|
| 와이 셔츠 | 동복 | • 흰색 각 카라 • 타이 부착 | • 동복착용 시 셔츠 안에 가급적 무채색 계열 풀라를 착용한다. • 단추를 모두 잠궜을 때 타이트 하지 않고 여유로워야 한다. |
| | 하복 | • 흰색상의(카라 흰색띠) • 왼쪽 주머니 | |
| 조끼 | | • 감청색 V넥 니트 | • 브이넥 니트 조끼만 착용 가능하다. |
| 자켓 | | • 회색, 3버튼, 금장단추 • 카라, 주머니 진한 회색 띠 | • 와이셔츠보다 길며 활동하기에 편해야한다. • 단추를 모두 잠猵을 때 타이트 하지 않고 여유로워야 한다. |
| 바지 | 동복 | • 짙은 회색 | • 너무 꽉 끼이지 않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 원형 변형을 금지한다. 다만, 크기가 맞지 않아 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하복 | • 옅은 회색 | |
| [선택]생활복 하복상의 | | • 보카시 감청색 • 목선, 카라, 소매 하얀색 띠 | • 하복 와이셔츠와 겸하여 착용 가능하다. |
| 타이 | | • 감청색 | • 고정형 넥타이로서 지정된 디자인으로 일과 중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

② 여학생

| 구분 | | 디자인 및 재질 | 규정 |
|-----------------|----|--------------------------------------|--|
| 블라 우스 | 동복 | • 흰색 둥근 카라 • 타이 부착 | • 동복착용 시 셔츠 안에 가급적 무채색 계열의 풀라를 착용한다. • 단추를 모두 잠猵을 때 타이트 하지 않고 여유로워야 한다. |
| | 하복 | • 흰색상의(카라 흰색띠) | |
| 조끼 | | • 감청색 V넥 니트 | • 브이넥 니트 조끼만 착용 가능하다. |
| 자켓 | | • 회색, 3버튼, 금장단추 • 카라, 주머니 진한 회색 띠 | • 블라우스보다 길며 활동하기에 편해야한다. |
| 치마 · 바지 | 동복 | • 짙은 회색 | • 치마, 바지 선택착용이 가능하다. • 치마 착용시 무릎 위 3cm 선까지 길이를 허용하며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착용하였을 때 치마의 주름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며, 주름을 박지 않는다. • 바지는 너무 꽉 끼이지 않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 원형 변형을 금지한다. 다만, 크기가 맞지 않아 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하복 | • 옅은 회색 | |
| [선택]생활복 하복상의 | | • 보카시 감청색 • 목선, 카라, 소매 하얀색 띠 | • 하복 블라우스와 겸하여 착용 가능하다. |
| 타이 | | • 감청색 | • 고정형 넥타이로서 지정된 디자인으로 일과 중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